

제46회 차량손해사정사 2차 자동차보험 이론과실무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예상답안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올해시험은 최근 출제문제중에서 계산문제가 하나도 없는 평이한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으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험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보상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문제1.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과 [차량단독사고 보장특별약관] 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서 말하는 사고를 각각 기술하고, '침수사고'에 대한 정의와 사고 유형별 조사요령 및 보상처리 절차를 서술하시오.(20점)

<안심문제풀이 20년 43회 기출문제풀이 5번, 파이널리뷰 차량지급기준 13번, 차량단독사고 보장특별약관만 추가되었습니다. 기본과정 및 안심문제풀이 자기차량 보상책임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으로 모범답안과 조금 달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1.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2) 보상하는 사고

(1)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생긴 손해

* 타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들을 삽입하는 경우는 타물체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비레물), 떨어지는 물체(낙하물)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2. 침수사고

1) 정의

침수사고란 주로 장마철에 태풍, 홍수, 해일 등에 의해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물이 차내로 유입되어 자동차가 기계적,전기적 결함 등을 일으키는 사고를 말한다. 약관에서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 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2) 침수사고의 유형

(1) 운행 중 침수

도로를 운행 중 침수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이 차내로 유입되어 엔진 등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로 할증이 되는 주요 유형이다.

①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도로 유실 또는 침수지역임을 알면서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② 천재지변에 의한 침수지역임을 알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침수된 경우

③ 침수된 지역을 무리하게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2) 주차 중 침수

차량이 주차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불어난 물에 의해 차량이 침수된 사고로서,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 내에 정상적인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상태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로, 할인이 1년간 유예된다.

3) 조사요령 및 보상처리 절차

(1) 침수사고는 전기장치, 엔진, 미션, 실내 장치 등에 대한 훼손으로 대부분 교환작업을 해야 하므로 수리비용이 고액이고 또한 수리 이후에도 수리하자 가능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수리 견적에 따라 전손/분손 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전속처리 건에 대하여는 전손보험금 지급과 함께 잔존물 가액을 결정하여 그 가액을 환입처리한다.

(3) 조사항목

- ① 침수환경
- ② 침수전 상황
- ③ 침수후 조치사항
- ④ 경과시간

(4) 구상검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상여부를 검토한다.

- ① 도로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한 침수인지 여부
- ② 상습범람 지역임에도 제방시설의 미 확충여부
- ③ 하천부지 주차장의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여부
- ④ APT, 건물 지하주차장의 배수시설의 하자에 따른 침수인지 여부

문제2.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견적서 작성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가 숙지하여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2년기출45회 1번, 모의고사2회 6번, 7번, 모의고사3회 6번, 18년41회 2번, 14년 47회기출 6번, 모의고사1회 7번, ② 작업항목 설정시 고려할 사항이 실무자에게 조금 유리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는 안심특강 및 문제풀이부터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답안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모범답안과 조금 달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① 사고차량의 관찰 내용

- (1) 외관의 관찰
- (2) 내판, 골격의 관찰(충격의 입력, 파급경로에 따른 점검)
- (3) 구조적 측면에서의 관찰
- (4) 계측에 의한 파악
- (5) 손상형태에 의한 파악

② 작업항목 설정시 고려할 사항

작업항목 설정시 작업항목별 수리작업의 종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주체작업

차량을 구성하는 주요부품에 대한 작업과 이것에 부대 또는 **관계**되는 비교적 작업량이 소규모인 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으로서, 반드시 공임에 계상되는 작업을 말한다. 예) 후론트 웬더의 탈착 또는 교환

(2) 부과작업(**부대작업**)

작업량이 비교적 적고, 주체작업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작업항목을 설정하여 단독으로 공임을 계상하지 않는다. 예) 후론트 웬더에 부착된 휠 가드, 머드 가드와 몰딩 등이 탈착 또는 교환

(3) 부수작업

주체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교적 작업량이 큰 다른 작업을 말하며, 별도의 작업항목을 설정하여 공임을 계상한다. 예) 뒤 휠더 교환의 주체작업에 대하여 뒤 유리, 뒷좌석 시트, 뒤 범퍼의 탈착

(4) 관련작업

2개 이상의 주요부품을 교환하는 복합주체 작업의 경우 관련 또는 중복되어 작업과정상 생략되는 부분에 대한 작업 범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공임은 작업시간이 생략되는 만큼 감소한다. 예) 후론트 패널과 한쪽의 휠하우스, 후론트 사이드 멤버를 동시에 탈착하는 경우 각 부품이 용접으로 연결된 부분 3곳이 관련 중복된다.

③ 도장비용 산정시 확인해야 할 사항

도장요금의 원가는 재료비, 도장공임, 가열 건조비로 구성된다.

1) 재료비 재료비 산출

(1) 주재료와 부재료로 분류되며, 도장 작업시 사용된 재료량을 실측하여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단, 도료 보존 과정이나 도장작업시 손실분을 일정을 인정한다.

2) 도장작업시간산출

(1) 실제 소용된 도장작업시간에 1시간당 공임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도장작업시간은 도장작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시간, 공통시간, 할증률 등으로 구분하며, 정미작업시간, 준비작업시간, 여유작업시간 및 퍼티 및 도료건조시간을 포함한다.

3) 할증률은 작업을 시행한 패널에 대해서만 정해진 할증률을 적용한다.

3) 가열 건조 비용

열처리를 위하여 부스를 1시간 동안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

된 1시간당 열처리 원가를 산출하고 실제 소요된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부품교체 판단요건

1) 보안부품

수리를 함으로 주행 안전도가 크게 저하되거나, 보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환 인정

2) 기술적인 판단

파손부품의 수리가 곤란하거나 판금, 교정,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함으로써 부품의 기능 및 내구성이 상당히 저하될 경우 교환 인정

3) 경제성

교환 부품의 가액보다 수리비(탈부착 공임 제외)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 교환 인정

문제3.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손해사정서 기재 및 설명사항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와 '손해사정서 기재 및 설명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로 올해 출제된 문제 중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을 문제로 보여집니다. 동차생이라면, 1차 보험업법에서 다뤄진 부분이지만, 2차수업 때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답안이 도출될 수 있고, 실무자라 하더라도 정리해서 쓰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3)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또는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해당되어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 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4)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는 보정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또는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6)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 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2. 손해사정서 기재 및 설명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1) 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 법 제 178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

(5)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

(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8)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2) 설명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문제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와 관련하여 특례가 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도로교통법에 다른 12대 중대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5점)

<안심문제중 약술문제 4번, 올해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문제이므로 12가지 중에서 8가지 이상아리도 기입하였다면, 10점정도는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법 1조).

2. 형사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처벌이 면죄 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처벌의 특례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면도 있으나 운전자들의 윤리의식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명백한 의사표시) 처벌 하지 못하는 죄를 말한다.

2) 보험가입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다.

가. 대인배상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나 공제

나. 우선지급금제도가 있는 보험이나 공제가입

3.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2) 중상해 사고

3) 12대 중과실 사고(신, 중, 속, 앞, 철, 횡, 무, 음, 보, 승, 어, 화)

가. 신호, 지시위반

운전자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 과속운전 사고

법정속도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례법상 과속은 제한속도 20km/h 초과를 말한다.

라.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측면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마.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철길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에서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철도 정거장 구내통로는 제외된다.

바.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사.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은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 주취(음주), 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때(2019.6.15 주취기준 변경)

자.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차.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이 사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카.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속도는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타. 화물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

운전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잘 고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5. 자동차 수리작업시간의 종류중 표준작업시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표준정비시간(자동차관리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관측법에 의하여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의 표준 5조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18년41회기출 2번, 모의고사1회 7번 표준작업시간과 표준5조건에 대하여 묻는 문제였습니다, 강의사간에 '작.공.차.부.속'으로 진행했는데, 암기하신 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리라 판단됩니다. >

1. 표준작업시간과 표준정비시간 비교

1) 표준작업시간 (자배법 제15조의2 ①항)

표준작업시간이란 특정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도와 기술을 갖춘 작업자가 표준화된 작업환경 및 방법하에서 정상적인 작업속도로 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2) 표준정비시간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정비시간의 가감 및 고지)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공개토록하고 있다..

2. 표준 5조건 (작.공.차.부.속)

손상차량의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를 표준 5조건이라 하며 표준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산출되는 작업시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작업시간 실측 전에 표준조건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1) 표준작업자

자동차 정비경력이 5년 정도 되었거나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작업자를 말한다.

2) 표준공장

손상차량을 복원 수리하는데 필요한 일정수준의 작업장 설비, 장비 및 공구 등을 갖추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인가기준에 따라 설립된 소형 및 종합자동차 정비공장을 말한다.

3) 표준차량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일반적인 자동차 보유기간, 차량 모델별 생산대수 및 판매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차량으로, 출고된 지 1~2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가 2~3만km인 경미한 손상상태의 차량을 말한다.

4) 표준부품

자동차 제작사에서 수리용 부품으로 직접 출하되며, 제작사 발행의 부품 카탈로그 및 부품 VAN(부가가치통신망)에 부품번호가 수록된 순정부품을 말한다.

5) 표준작업속도

표준작업자가 처리해야 할 작업량의 누적 또는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작업속도를 높이려고 자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컨디션 저하 등으로 인해 작업속도가 변화하지 않는 정상적인 작업관리 하에서 행해지는 보통의 작업속도를 의미한다.

문제6. 현행 대물차량보상 실무상의 과실상계 기본조건을 기술하고, '차대차 비접촉사고'에 대한 설명과 긴급피난행위 판단조건 및 사고인과관계 성립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22년45회기출 3번, 19년42회기출 3번, 16년39회기출 7번, 파이널리뷰 8번,
과실상계 기본조건은 수월했으나, 비접촉부분은 실무자들은 다소 쓸 수 있으나,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수험생들 입장에서 다소 난해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과실상계의 기본조건

1) 과실상계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손해의 확대등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상계내지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다.

2) 과실의 의의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3)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초래된 손해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자기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다.

2. 차대차 비접촉사고

1) 정 의

차대차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과 차량 등에서 충돌로 인해 발생하지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비접촉 사고는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피해 사고를 방지하려고 한 운전자가 2 차적인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2) 상당인과관계 여부

비접촉 사고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에 의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 때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한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긴급히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는 가해자의 차선변경행위에 의하여 발생(CCTV 나 블랙박스로 입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긴급피난관련 과실여부

가.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은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있고, 일단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즉, 기본적으로 뺑소니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늘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운전자 자신 또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 활용을 잊지 말고, 사각지대를 잘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상 원인제공 과실을 사고양태에 따라 작게는 20~30%부터 많게는 70~8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시야사각지대

등이나, 무리하게 방향지시등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고를 피양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일종의 긴급피난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7.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표준약관의 '경미한 손상'을 설명하고, 그 유형별 손상상태 및 수리기준에 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10점)

<17년40회기출 1번, 모의고사1회 1번, 경미손상수리기준에 대한 약관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로 안심특강 및 문제풀이부터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모범답안과 조금 달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1. 개념

경미손상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2. 유형별 손상상태 및 수리기준 (기타외장부품)

구분	유형	손상상태 설명
손상	제 1 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제 2 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범퍼소재 손상 없음)
	제 3 유형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의 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되어 퍼티 및 판금 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기타손상		- 범퍼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 꺾임, 구멍 등이 생긴 상태 등(경미한 손상의 복원수리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손상) - 기타 기존 파손으로 사고부위와 동일 부위를 복원수리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3. 유형별 수리기준 (기타 외장부품)

구분		경미한 손상			기타손상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경미손상 수리기준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 * 다만, 범퍼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부품교체 가능			부품교체 가능 * 단, 정비업체가 하자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수리방법	범퍼 탈착	범퍼미탈착	손상부위에 따라 범퍼탈착여부 결정		범퍼탈착
	소재 복원	해당사항 없음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한 복원수리		손상부위보강(패치작업) 및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한 복원수리
	도장 복원	폴리(광택작업)		보수도장	
교환조건 (예시)		· 수리비용이 교환비용(간접손해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 이중패널 부품의 해밍(가장자리)부위 손상으로 내측패널이 이탈된 경우 · 부품에 파단(찢어짐)이나 천공이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수리기술로 복원이 어려운 손상(복원수리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등			

단, 제3유형(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는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를 허용하며,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한다. (2023.1.1.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